

# 2007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7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8. 5. 7 ~ 5. 26(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만재(총괄)
  - 검사위원 : 김시한(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 검사위원 : 김진석(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 검사위원 : 정장용(일반·특별회계 세입일반)
  - 검사위원 : 임준환(일반·특별회계 세출일반)

## 평창군결산검사위원회

# 2007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창군수 귀하

2008년 5월 26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5월7일부터 2008년5월26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대표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이만재

김시한

김진석

정장용

임준환



**2007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	5
2) 세출	6
2. 일반회계	
1) 세입	7
2) 세출	7
3. 특별회계	
1) 세입	8
2) 세출	9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10
2) 채권	10
3) 채무	11
4) 공유재산	11
5) 물품	12
5. 세입·세출외현금	12
6. 검사결과	13
7.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15

# 2007회계연도

##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7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6)	891,833,339,720	904,160,067,267	882,210,864,067	921,617,630	21,027,588,570
당해년도 (2007)	823,496,753,517	841,196,291,761	833,926,982,065	889,013,160	6,380,296,536

#### 가. 세입결산 개요

- 2007년도 실제수납액 833,926,982,065원은 예산현액의 10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로 나타남.

#### ※ 2006년도

- 실제수납액 : 882,210,864,067원 (예산현액의 99%)
- 징수결정액 : 904,160,067,267원 (예산현액의 97.6%)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6)	827,828,006,000	64,005,333,720	891,833,339,720	311,726,000,907
당해년도(2007)	255,050,669,000	568,446,084,517	823,496,753,517	629,268,300,562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568,446,084,517 (15,686,100,000)	11,661,254,296	570,484,863,160	1,869,711,159	15,855,167,484
172,205,582,670	22,022,870,285	204,658,681,503	1,709,307,773	30,743,791,060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2% 감소한 255,050,66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3,496,753,517원임.
- 지출액은 629,268,300,562원으로 예산현액의 76%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6)	891,833,339,720	247건 568,446,084,517 (15,686,100,000)	133건 541,957,166,720 (15,300,000,000)	81건 10,665,987,747	33건 15,822,930,050 (386,100,000)	64%
당해연도 (2007)	823,496,753,517	400건 172,205,582,670	65건 39,470,594,830	306건 112,302,670,850	29건 20,432,316,990	21%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수치임.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6)	819,364,557,900	829,292,901,807	808,766,924,427	921,617,630	19,604,359,750
당해연도 (2007)	756,984,524,567	771,882,158,921	766,613,167,208	889,013,160	4,379,978,553

####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766,613,167,208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고  
징수결정액은 771,882,158,921원으로 예산현액의 101.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임.

※ 2006년도

- 실제수납액 : 808,766,924,427원 (예산현액의 99%)
- 징수결정액 : 829,292,901,807원 (예산현액의 101.2%)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6)	771,862,477,000	47,502,080,900	819,364,557,900	257,002,410,107
당해연도(2007)	202,155,949,000	554,828,575,567	756,984,524,567	589,430,864,338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554,828,575,567 (15,000,000,000)	7,533,572,226	551,764,514,320	660,941,569	11,274,997,184
152,371,373,280	15,182,286,949	177,182,302,870	1,699,210,113	23,111,719,477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202,155,94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54,828,575,567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56,984,524,567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364건에 152,371,373,280원으로 예산현액의 20%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6)	819,364,557,900	206건 554,828,575,567 (15,000,000,000)	123건 536,894,733,650 (15,000,000,000)	77건 9,741,221,047	6건 8,192,620,870	67.7%
당해연도 (2007)	819,364,557,900	364건 152,371,373,280	53건 33,465,889,280	306건 112,302,670,850	5건 6,602,813,150	20%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6)	72,468,781,820	74,867,165,460	73,443,939,640	0	1,423,225,820
당해연도 (2007)	66,512,228,950	69,314,132,840	67,313,814,857	0	2,000,317,983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67,313,814,857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징수결정액은 69,314,132,840원으로 예산현액의 104.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임.

※ 2006년도

- 실제수납액 : 73,443,939,640원 (예산현액의 101.3%)
- 징수결정액 : 74,867,165,460원 (예산현액의 103.3%)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6)	55,965,529,000	16,503,252,820	72,468,781,820	54,723,590,800
당해년도(2007)	52,894,720,000	13,617,508,950	66,512,228,950	39,837,436,224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3,617,508,950 (686,100,000)	4,127,682,070	18,720,348,840	1,208,769,590	4,580,170,300
19,834,209,390	6,840,583,336	27,476,378,633	10,097,660	7,632,071,583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52,894,720,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66,512,228,95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36건에 19,834,209,390원으로 예산현액의 30%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6)	72,468,781,820	41건 13,617,508,950 (686,100,000)	10건 5,062,433,070 (300,000,000)	4건 924,766,700	27건 7,630,309,180 (386,100,000)	18.8%
당해연도 (2007)	66,512,228,950	36건 19,834,209,309	12건 6,004,705,550	0건	24건 13,829,503,840	30%

※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임

※ 익년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한 수치임.

##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6)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7)
		계	수납액	지출액	
계	2,823,320,432	279,721,256	683,354,166	403,632,910	3,103,041,688
식품진흥기금	94,971,093	7,019,172	14,809,172	7,790,000	101,990,265
사회복지기금	2,255,442,659	15,001,574	81,281,574	66,280,000	2,270,444,233
재난관리기금	472,906,680	257,700,510	587,263,420	329,562,910	730,607,190

####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3개로

기금현재액은 2006년도 2,823,320,432원 보다 279,721,256원이 증가된 3,103,041,688원을 관리하고 있음.

###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6)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7)
합 계	1,123,043,286	5,874,585,652	1,136,016,734	5,861,612,204
일반회계	-	4,765,363,470	942,654,000	3,822,709,470
주택사업특별회계	532,153,430	832,381,130	5,578,250	1,358,956,31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590,889,856	276,841,052	187,784,484	679,946,424

####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6년말 현재액 1,123,043,286원에서
- 2007년도에 5,874,585,652원이 발생, 1,136,016,734원이 소멸되어
- 2007년도말 현재액은 5,861,612,204원임.

### 3) 채 무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7,019,272,000	3,292,020,000	5,000,000,000	1,707,980,000	22,000	10,311,270,000	
일 반 회 계	1,049,472,000	4,598,620,000	5,000,000,000	401,380,000	22,000	5,648,070,000	
특 별 회 계	소 계	5,969,800,000	△1,306,600,000	-	1,306,600,000	-	4,663,200,000
	상수도사업 주택 사업	5,969,800,000	△1,306,600,000	-	1,306,600,000	-	4,663,200,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6년도말 현재액 7,019,272,000원에서
- 2007년도에 3,292,020,000원이 발생하여
-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311,270,000원임.

###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용도별	2006년말현재액	2007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193,230,701,000	250,554,836,165	57,324,135,165	
행 정 재 산	계	157,570,018,000	214,534,806,165	56,964,788,165
	공공용재산	131,606,748,000	158,660,728,000	27,053,980,000
	공용 재산	24,108,997,000	54,009,353,165	29,900,356,165
	기업용재산	1,854,273,000	1,864,725,000	10,452,000
보 존 재 산	0	0	0	
잡 종 재 산	35,660,683,000	36,020,030,000	359,347,000	

가. 2007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006년말 현재액193,230,701,000원에서 57,324,135,165원이 증가한 250,554,836,165원으로

- 토지 126,461,000㎡ 199,335,547,660원
- 건물 90,001㎡ 45,687,656,680원
- 기타 572건 5,531,631,825원임.

##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7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23종	수량	216	63	4	67	8	7	15	268
	금액	1,686,772	410,300	28,500	438,800	125,391	49,459	174,850	1,950,722

가.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6년말 현재액 1,686,772,260원보다 263,950,000원이 증가한 1,950,722,260원으로 신규취득 438,800,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등으로 174,850,000원 처분함.

##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7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6,300,718,950	△1,638,375,541	8,121,417,950	9,759,793,491	4,662,343,409
부 담 금	0	0	0	0	0
위 탁 금	3,219,492,924	△1,731,080,460	114,849,350	1,845,929,810	1,488,412,464
보 증 금	314,143,040	1,159,866,290	1,281,629,400	121,763,110	1,474,009,330
일시보관금	2,579,061,217	△1,468,855,578	4,093,142,643	5,561,998,221	1,110,205,639
잡종금등기타	188,021,769	401,694,207	2,631,796,557	2,230,102,350	589,715,976

가. 2007년도말 현재액은 4,662,343,409원으로 2006년도말 6,300,718,950원보다 1,638,375,541원이 감소함.

※ 읍·면, 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 포함한 금액임.

## 6. 검사결과

### □ 총 평

2007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가. 일반회계기준 세입은 전년대비 5.5% 감소하고, 수해복구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 50억을 발행하는 등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니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 및 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이후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이월되어 적기에 사업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지적사항

- 가. 예산을 읍·면장에게 재배정함에 있어 사업비 예산의 경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기 배정하여 사업이 회계연도내 완공되어야 함에도 본예산이 12월중에 재배정되는 등 예산의 집행이 부적정
- 나. 3개 읍·면에서는 7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행사용 송어의 검수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검수 후 축제위원회에 인계하였으며, 수의계약을 위하여 같은 날에 분리하여 품의하는 등 예산집행미흡

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하지 않고 서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사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야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음.

아울러, 농·특산물 유통실적 10,671백만원 중 우리군 이외의 농특산물 유통(44%)에 따른 수수료 등 수입 없이 추진하는가 하면 일반농가의 농산물 판매실적도 미비함.

또한, 의회 의결도 없는 24,431천원의 '아파트 알뜰장터기금'을 운영하는 등 사무소 운영이후 자체감사나 결산이 전무하였으므로 종합적 점검 및 적정한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함.

라.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자금의 지출시기 및 금액의 검토 없이 필요 이상의 자금을 배정받아 반납하는 등 유휴자금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으며, 일일지급명령현황과 세출일계표 상이, 세출예산통장 금고위임관리, 2008.02.29한 자금정리 미이행, 이자수입 정리미흡, 예산성립전 품의, 무예산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마. 읍·면에서는 자금지출시기, 금액의 검토 없이 과다한 자금을 재배정 받아 읍·면의 통장에 관리하고 있어 결산기준 반납액이 1,569,792천원으로 과다한 유휴자금 발생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

#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비고
1	예산재배정 부적정(기획감사실/해당부서)	
2	읍·면 결산검사의 개선(재무과)	
3	세출자금 이자수입 불입 부적정(재무과)	
4	평창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문화체육과)	
5	평창 재래시장 활성화(관광경제과)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환경과)	
7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건설과)	
8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처리(건설과)	
9	평창군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추진미흡(보건사업과)	
10	평창군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보건사업과)	
11	서울사무소 운영 부적정(기획감사실/농업기술센터)	
12	행사용 송어구입 예산집행 미흡(농업기술센터)	
13	가산메밀꽃단지육성지원 사업비 지급 부적정(농업기술센터)	
14	보조금 관리 부적정(농업기술센터)	
15	농기계 사용료 지급 부적정(농업기술센터)	
16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화수리기술포육(농업기술센터)	
17	읍·면 세출자금 관리 미흡(읍·면)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

○ 제 목 : 예산재배정 부적정

○ 현 황

▶ '07.09.01이후 재배정 사업비(34건 - “붙임”)

- |          |     |          |     |
|----------|-----|----------|-----|
| - 이월예산   | 11건 | - 본예산    | 16건 |
| - 1회추경예산 | 2건  | - 2회추경예산 | 4건  |
| - 3회추경예산 | 1건  |          |     |

○ 문제점

▶ 실·과장 및 제1관서장이 예산을 읍·면장에게 재배정함에 있어 사업비 예산의 경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기 배정하여 사업이 회계년도내 완공되어야 함에도 본예산이 12.20에 재배정되는 등 예산의 집행이 부적정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

## ※ 검사자 의견

○ 본예산의 경우 조기에 재배정하고,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성립 즉시 재배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 예산재배정현황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주관부서	사 업 명	배 부 처	배 부 액	배부 일자
1	주민생활지원과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도 (1,3,4,5,6,7,8)	26,600	09.11
2	건 설 과	[명]소규모시설수해복구	진부면	846,664	09.17
3	건 설 과	농촌마을길정비	도(1,7,8)	130,000	09.17
4	문화관광과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	용평면	2,000	09.18
5	지역도시과	시가지주민불편해소사업	봉평면	40,000	10.01
6	농업기술센터	어도시설사업	진부면	90,000	10.01
7	재난안전관리과	[사고]7월집중호우수해복구(민방 위비상급수)	진부면	1,700	10.02
8	재난안전관리과	[명,전용]농경지보호와주변재피해 방지사업	도(1~8)	1,900,000	10.02
9	건 설 과	[명]소규모시설수해복구	진부면	732,688	10.04
10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보수	도(2,3,4)	60,000	10.04
11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도(1,5)	20,133	10.10
12	상하수도사업소	[명시]하수도 수해복구	대관령면	140,000	10.15
13	지역도시과	농촌 빈집정비	도(1~7)	16,000	10.15
14	지역도시과	시가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도(4,7)	47,000	10.16
15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진부면	20,000	10.23
16	건 설 과	[명]7월집중호우 하천,소하천 수해복구	도(1,2,3,5)	400,000	10.26
17	건 설 과	하천골재채취예정지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관령면	20,000	10.26
18	건 설 과	농촌마을길 정비	진부면	70,000	11.01
19	상하수도사업소	[명시]하수도 수해복구	대관령면	10,440	11.05
20	문화관광과	웰컴투동막골세트장정비	미탄면	30,000	11.08
21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보수	용평면	25,000	11.80
22	건 설 과	마을회관 신축	도(7,8)	600,000	11.08
23	산 림 과	노산성 소공원 조성	평창읍	50,000	11.19
24	건 설 과	[명시]소규모시설수해복구	도(1,8)	50,000	11.19
25	스포츠사업단	체육시설보수	용평면	10,000	11.21
26	문화관광과	바위공원시설물 확충사업	평창읍	20,000	11.27
27	스포츠사업단	[사고]다목적씨름장용텐트제작및 설치공사	진부면	70,000	11.27
28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봉평면	30,000	11.28
29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미탄면	20,000	12.04
30	건 설 과	차항천 수해위험지 정비사업	대관령면	7,524	12.20
31	문화관광과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	대관령면	10,200	12.20
32	건 설 과	[명]소규모시설수해복구	방림면	330,000	12.20
33	건 설 과	[명]정주기반확충사업	대화면	205,000	12.20
34	스포츠사업단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대화면	40,000	12.21

※ 작성 : '07.09.01 이후 재배정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2

○ 제 목 : 읍·면 결산검사의 개선

○ 현 황

▶ 1일 2개 읍·면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검사

○ 문제점(개선사항)

▶ 읍·면의 재무담당부서 폐지로 세입분야 실적 미미함.

▶ 세출분야의 경우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이고 예산재배정은 실·과 및 제1관서에서 확인 가능함.

## ※ 검사자 의견

○ 읍·면의 결산검사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개선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3
- 제목 : 세출자금 이자수입 불입 부적정
- 현황
  - ▶ 봉평면 : 1,070,122원 2008.03.19불입
- 문제점
  - ▶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봉평면의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하반기까지의 이자수입을 2008.03.19불입하여 2008세입으로 처리함

## ※ 검사자 의견

- 세입총괄부서 주관으로 읍면, 실과, 사업소 등의 상·하반기 이자수입 및 01.01~02.28까지 통장해지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적정불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정조치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4

○ 제목 : 평창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 현황

▶ <08년계획>

- 본부석 누수부분 개보수
- 운동장 하수구 파손부분 교체
- 스탠드 난간 흔들림 보수 등

○ 문제점(개선사항)

▶ 스포츠 타운 건설부지(일부 매입완료) 사용승락을 받지 못한 부지가 활용토록 토지주와 협의됨에 따라 조속 설계 추진하기 바람

## ※ 검사자 의견

○ 스포츠 타운 사업 집행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구 관리에 집중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5
- 제목 : 평창 재래시장 활성화
- 현황

- ▶ 아케이드 시설공사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비내역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2007 ~2008	시설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834,000	500,000	125,000	125,000	84,000	추진중

- ▶ 화장실 신축공사

-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상2층)

- 문제점

- ▶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공사중지
- ▶ 아케이드 시설공사 대상건축주 반대

## ※ 검사자 의견

- 아케이드 시설공사는 기존 건물의 벽면 이용설치보다 단독 기둥 설치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화장실 신축공사도 이해당사자와 협의, 조속시행요망
- 계획된 사업 조속 시행 완료하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로 주민소득기여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6
- 제목 :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
- 현황
  - ▶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고운영 미흡(환경과)
- 문제점
  - ▶ 결산검사시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업무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아무런 검토 없이 처리되었음.

## ※ 검사자 의견

- 환경과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특별회계 이관 여부를 결정하여 완료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7

○ 제목 :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 현황

▶ 미탄면 : 473,820원  
    대화면 : 120,960,761원  
    계 : 121,434,581원

○ 문제점

- ▶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농어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토록 되어있음.
- ▶ 사업시행은 군수(건설과)가 시행하고 법령이나 위임조례의 근거 없이 읍·면장에게 청산토록 하여 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만 할뿐 현황이나 근거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 ※ 검사자 의견

○ 군에서 직접 환지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청산완료토록 처리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8

○ 제 목 :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처리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도	4,120	403,590	2,381	99,296	1,829	304,294	25
2007년까지 누계	33,351	3,337,623	22,502	1,494,599	22,502	1,494,599	45

○ 문제점

- ▶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도 급증하고 있음.
  -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가산금 및 벌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있어도 납부를 기피
  - 차량말소나 폐차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납부의식 팽배
  
- ▶ 손쉬운 체납액 징수 확보수단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차령을 초과한 차량(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실효성이 없음.

## ○ 개선사항

- ▶ 관허사업의 인허가시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체납여부도 확인하여 관허사업 제한
- ▶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에 의한 압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광역시·도간의 이전·변경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 검사자 의견

-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강제징수하기가 곤란하여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 말소나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임.
- 현재 과태료 등 체납액 부과징수는 민원창구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고, 2007년도 과태료 등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가 4,120건에 4억3천만원이나 징수는 2,381건에 9천9백만원에 불과하고, 체납액이 1,829건에 3억4백만원에 달하여 1인이 담당하기에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평창군 전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인원을 보강하여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6월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체납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행위규제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업무수행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임.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9

○ 제 목 : 평창군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추진미흡

○ 현 황

- ▶ 사 업 비 : 1,100,502천원
- ▶ 사업규모 : 지상2층(719.04m<sup>2</sup>)
- ▶ 사업기간 : 2007.01.01 ~ 2008.10.31

○ 문 제 점

- ▶ 본예산성립후 착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
- ▶ 특히 설계심의완료 후 입찰공고까지 2개월이나 소요되고 건축협의를 '07.08.20신청, '07.10.01협의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후 명시이월 되었음.

## ※ 검사자 의견

- 각종 건축공사 집행시 설계 및 건축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이 필요함.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0
- 제 목 : 평창군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현 황
  - ▶ 2007회계년도 결산 반납자금 : 1,080,186,600원
  - ▶ 가평보건진료소 철거보상 : '07.04.04원인행위 '07.06.01예산성립
  - ▶ 장례식장 에어컨 구입 : 무예산으로 '07.09.20지출
- 문제점
  - ▶ 자금의 지출시기, 금액의 검토없이 자금을 배정받아 유휴자금이 과다하게 발생
  - ▶ 세출일계표와 일일지급명령현황이 상이한 점, 세출예산통장 금고위임관리, 2008.02.29한 자금정리 미이행, 이자수입의 정리미흡, 예산성립전 품의, 무예산집행 등

## ※ 감사자 의견

- 회계관련 공무원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함(재발방지 대책)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1

○ 제목 : 서울사무소 운영 부적정

○ 현황

- ▶ 사무소운영 : 2000.10.16 ~ 현재
- ▶ 직원 현황 : 공무원 2, 원협 2, 협력업체 28
- ▶ 재산(물품) : 관사2동, 창고1동, 차량1대 등
- ▶ 우리군 생산 농특산물 유통실적 : 총유통량의 56%
- ▶ 아파트 알뜰장터 기금운영 : 24,431천원 회수불가  
※ 농정과-2585('08.03.10)호에 근거함.

○ 문제점

- ▶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없이 서울사무소 설치
- ▶ 관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근거 없이 185백만원으로 2동의 주거용 건물 임차사용
- ▶ 농특산물 유통실적 10,671백만원 중 우리군 이외의 농특산물 유통(44%)에 따른 수수료 등 수입 없이 추진하는가 하면 일반농가의 농산물 판매실적은 없을 정도임.
- ▶ 의회의 의결 없이 아파트 알뜰장터 기금운영

## ※ 감사자 의견

- 사무소 운영이후 자체감사나 결산검사가 전무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이외의 부서(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후 적정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2

○ 제목 : 행사용 송어구입 예산집행 미흡(재배정)

○ 현황

- ▶ 행사용 송어구입비 : 100,000천원
  - 평창읍 : 20,000천원
  - 진부면 : 40,000천원
  - 대관령면 : 40,000천원

○ 문제점

- ▶ 3개 읍·면에서 7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송어의 검수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검수후 축제위원회에 인계
- ▶ 구입단가(kg당 6,500원)는 7개 업체가 모두 통일되었으며 수의계약을 위하여 분할 발주되었음(같은 날에 분리하여 품의)

## ※ 검사자 의견

- 수산직이 근무하는 축산과에서 일괄구입 후 해당 축제위원회로 배부하는 등 합리적인 집행대책이 필요함.
- 읍·면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이기도 함.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3

○ 제 목 : 가산메밀꽃단지육성지원 사업비 지급 부적정

○ 현 황

▶ 지 출 액 : 129,789,780원

▶ 사 업 자 : 이호석문학선양회(메밀꽃단지운영이사 : 김상기)

▶ 지출과목 : 농촌지도, 301-12(기타보상금)

○ 문 제 점

▶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규정에 없는 사업비를 보상금으로 지급

## ※ 검사자 의견

○ 문화관광축제지원(호석문화제)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조례제정 등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4

○ 제목 : 보조금 관리 부적정

○ 현황

▶ '07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급 : 190,000천원

▶ '07수출물류비 지급 : 50,000천원

○ 문제점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은 교부결정, 교부결정통지, 사업비의 정산검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급결의만하여 지급하였음.

## ※ 검사자 의견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관리하기 바람.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5

○ 제목 : 농기계 사용료 지급 부적정

### ○ 현황

▶ 논고르기 : 409,500원  
모내기 : 535,500원  
벼탈곡 : 724,750원  
계 : 1,669,750원

### ○ 문제점

▶ 농기계 사용료는 임차료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지사역인부임에서 지급

## ※ 검사자 의견

○ 예산과 집행의 내용이 상호 일치되도록 시정

#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 호 : 16

○ 제 목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기술교육

○ 현 황

- ▶ 위 치 : 평창군농업기술센터(평창읍 여만리)
- ▶ 규 모 : 1개소 1동(498㎡), 임대농기계 49종 85대
- ▶ 사 업 비 : 13,000천원(군비)
- ▶ 운영기간 : 2008.01.01 ~ 12.31(연중) - 2007년도 기반조성
- ▶ 운영실적
  - 농기계 순회수리 ⇒ 년 48회 오지마을 순회수리
  - 농기계 임대사업('08.03.01~05.20) ⇒ 146농가 146대 206일 241ha

○ 문제점

- ▶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어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인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서 년48회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와 병행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농기계교관 1명 및 2008년 5월 전문자격소지 기능직1명 채용예정으로는 절대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 검사자 의견

-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실시 및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확보가 필요함.
- 현재 농기계교관 1명(운전원1명), 채용계획 인력1명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므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대여농기계를 작업현장에 직접 실어다주고 작업완료 후 직접 회수함으로써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 지적사항

- 번호 : 17
- 제목 : 읍·면 세출자금 관리 미흡
- 현황

▶ 읍·면·사업소 자금보유현황

(단위 : 원)

부서명	면 비			재 배 정		
	'07.12.31	'08.02.28	증감	'07.12.31	'08.02.28	증감
평창군의회	76,523,520	169,280,810	92,757,290	49,295,670		
농업기술센터	740,867,620	899,352,720	158,485,100	16,166,320		
보건의료원	1,494,099,240	2,080,088,280	585,989,040	1,080,186,600		
상하수도사업소	1,380,965,440	170,462,230	-1,210,503,210			
평창읍	10,900,539	7,538,100	-3,362,439	132,629,338	68,182,200	-64,447,138
미탄면	13,858,590	2,074,790	-11,783,800	299,420,020	119,245,730	-180,174,290
방림면	74,368,506	655,383	-73,713,123	102,789,379	45,177,740	-57,611,639
대화면	20,721,838	7,761,070	-12,960,768	396,859,520	203,663,940	-193,195,580
봉평면	50,111,047	42,988,540	-7,122,507	203,435,400	19,911,220	-183,524,180
용평면	46,086,601	5,299,541	-40,787,060	990,184,172	348,485,402	-641,698,770
진부면	64,934,240	9,155,950	-55,778,290	1,567,730,060	577,458,550	-990,271,510
대관령면	38,533,770	2,088,780	-36,444,990	241,712,774	187,687,390	-54,025,384
계촌출장소	113,859	111,530	-2,329			

### ○ 문제점

- ▶ 재배정의 경우 자금지출시기, 금액의 검토없이 과도한 자금을 배정 받아 읍·면의 통장에 관리하고 있어 결산기준 반납액이 1,569,792천 원으로 과도한 유휴자금이 발생함.
- ▶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금집계표 미비치 등

## ※ 감사자 의견

- 읍·면장은 적정 금액의 자금을 요구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과도한 금액이 읍·면 통장에 예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	예산재배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예산의 경우 조기에 재배정하고, 추경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성립 즉시 재배정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별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예산재배정이 최소화됨은 물론 적기에 재배정 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음(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예산의 경우 1/4분기 전에 재배정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li> <li>- 본예산의 경우에도 6월말 이전까지 사업추진 주체를 정하되 읍·면추진사업은 7월 이전 재배정토록 개선하겠음</li> <li>- 또한,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 15일 이내에 확정 짓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li> </ul> </li> <li>○ 향후 추진되는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재배정을 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음(해당부서)</li> </ul>	기획감사실 / 해당부서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2	읍면결산검사의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 결산검사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회계연도 읍·면 결산검사는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필요 자료는 서면 검사토록 개선 하겠음.</li> </ul>	재무과
3	세출자금 이자수입 불입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년도 수입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처리 되어야 하나 봉평면의 경우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하반기까지의 이자 수입을 지연하여 '08.03.19 2008년 세입으로 불입처리</li> <li>○ 세입총괄부서 주관으로 읍·면, 실·과, 사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이자수입 불입 내역 확인 및 시정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불입 내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6월 중 전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이자불입 내역 점검 및 실태분석</li> </ul> </li> <li>○ 이자불입 관련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금 관리 계좌에 대한 서면 교육실시 (2008년 8월까지)</li> </ul> </li> </ul>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4	평창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타운 건설부지(일부 매입완료)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한 부지가 활용토록 토지주와 협의됨에 따라 조속 설계 추진하기 바람</li> <li>○ 스포츠 타운 사업 집행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구 관리에 집중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종합운동장 본부석의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도민체전 유치시 시설확충과 시설보완 등 전면 개보수가 불가피하여 현재 전면 보수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도민체전 유치 전에는 필요한 부분의 보수를 진행하고자 함.</li> </ul>	문화체육과
5	평창 재래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케이드 시설공사는 기존 건물의 벽면 이용 설치보다 단독 기둥 설치함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li> <li>○ 화장실 신축공사도 이해당사자와 협의, 조속시행 요망</li> <li>○ 계획된 사업 조속시행 완료하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로 주민소득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재래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07. 12월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상태로 화장실 부지 진입로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도로의 보상협의를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 공사 중지를 해제한 후 사업추진 할 계획임.</li> <li>○ 평창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공사는 현재 재래 시장 전체구간 중 소유자 반대구간을 제외한 A구간(주출입구)만을 사업추진 하고자 도에 사업구간 변경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사업변경 승인 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li> </ul>	관광경제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6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결산검사시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아무런 검토 없이 처리되었음.</li> <li>○ 환경과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특별회계 이관 여부를 결정하여 완료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검토하여 처리 하겠음.</li> </ul>	환경과
7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법령 이나 위임조례의 근거 없이 읍·면장에게 청산토록 하여 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만 할뿐 현황이나 근거자료는 관리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li> <li>○ 군에서 직접 환지계획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청산완료토록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탄면, 대화면에 환지 기초자료를 파악후 환지청산금 지불 및 청산을 위한 대책수립 해결해 나갈 계획임</li> </ul>	건설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8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강제징수하기가 곤란하여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 말소나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임.</li> <li>○ 현재 과태료 등 체납액 부과징수는 민원창구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고, 2007년도 과태료 등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가 4,120건/4억3천만원이나 징수는 2,381건에 9천9백만원에 불과하고, 체납액이 1,829건에 3억4백만원에 달하여 1인이 담당하기에 과중한 것으로 판단</li> <li>○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평창군 전체 세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인원을 보강하여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체납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행위규제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업무수행 인원을 보강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율 제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허사업 인허가시 과태료 체납 여부 확인하여 제한</li> <li>- 재산조회를 통하여 차량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등도 압류 처리하여 실효성 확보</li> <li>- 지속적 납부 독촉</li> <li>- 과태료 납부홍보(우리고장소식지, 홈페이지 등)</li> </ul> </li> <li>○ 과태료 부과율 감소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관련 각종 신고 및 검사 홍보(우리고장소식지, 홈페이지 등)로 과태료 부과 감소</li> </ul> </li> <li>○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인력은 조직진단에 반영토록 인사부서와 협의</li> </ul>	건설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9	평창군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추진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예산 성립 후 착공까지 10개월이 소요 되는 등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li> <li>- 특히 설계심의완료 후 입찰공고까지 2개월이나 소요되고 건축협의를 '07.08.20 신청, '07.10.01협의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후 명시이월 되었음.</li> <li>- 각종 건축공사 집행시 설계 및 건축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4월 용역착수 및 설계의 중앙심의에 4월이 소요되었으며</li> <li>- 건축협의를 따른 설계의 추가보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li> </ul> </li> <li>○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용역을 1월중에 착수하여 사전협의로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여 4월중 사업 착수 및 년내 준공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li> </ul> </li> </ul>	보건사업 과
10	평창군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의 지출시기, 금액의 검토 없이 자금을 배정받아 유휴자금이 과다하게 발생</li> <li>○ 세출일계표와 일일지급명령현황이 상이한 점, 세출예산통장 금고위임관리, '08.02.29한 자금정리 미이행, 이자수입의 정리미흡, 예산성립전 품의, 무예산집행 등</li> <li>○ 회계 관련 공무원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함(재발방지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의 유휴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자금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li> <li>○ 년2회(상·하반기) 이자수입 발생 즉시 군 수입으로 조치하여 세출일계표와 일일지급명령이 동일하도록 하겠음</li> <li>○ 예산 집행시 업무 숙지로 미예산 품의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li> </ul>	보건사업 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1	서울사무소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없이 서울사무소 설치</li> <li>○ 관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근거 없이 2동의 주거용 건물 임차사용</li> <li>○ 농특산물 유통실적 10,671백만원 중 우리군 외의 농산물 유통(44%)에 따른 수수료 등 수입 없이 추진하는가 하면 일반 농가의 농산물 판매 실적은 없을 정도임</li> <li>○ 의회 의결 없이 아파트 알뜰장터 기금운영</li> <li>○ 사무소 운영이후 자체감사나 결산검사가 전무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이외의 부서(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후 적절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 설치, 관사사용 등에 대한 종합검토 후 금년 6월중 대안모색과 적정 운영방안을 수립</li> </ul>	<p>기획감사실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p>
12	행사용 송어구입 예산집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송어납품 검수 후 축제위원회 인계</li> <li>○ 수산직이 근무하는 축산과에서 일괄구입 후 해당 축제위원회에 배부 등 합리적인 집행대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용 송어구입 지원예산 확보시 지역 축제위원회, 해당 읍·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행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할 계획임</li> </ul>	<p>농업기술센터 (축산과)</p>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3	가산매밀꽃단지육성지원 사업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규정에 없는 사업비를 보상금으로 지급</li> <li>○ 문화관광축제지원(효석문화제)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거나 조례제정 등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축제지원(효석문화제)사업비에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음</li> </ul>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4	보조금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은 교부결정, 교부결정통지, 사업비의 정산 검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지급결의 만하여 지급하였음.</li> <li>○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관리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지출 정산하겠음.</li> </ul>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5	농기계 사용료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사용료는 임차료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급</li> <li>○ 예산과 집행의 내용이 상호 일치 되도록 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찰·시험답 이양 및 수확작업시 인부와 같이 기계를 사용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농기계 임차료는 운영비에 편성하여 예산과 집행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겠음.</li> </ul>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6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인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서 연 48회 오지마을 농기계순회 수리와 병행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농기계교관 1명 및 2008년 5월 전문 자격 소지 기능직1명 채용예정으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li> <li>○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실시 및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확보가 필요함. 현재 농기계교관 1명(운전원1명), 채용 계획 인력 1명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으므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대여농기계를 작업현장에 직접 실어다 주고 작업완료 후 직접 회수함으로써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3월부터 1개소 49종 85대의 작업기류 위주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농기계교관 1명(운전원 1)이 수리차량 1대로 8개 읍면 48회의 순회수리 및 임대 농기계 정비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순회수리 확대실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2008년 5월 기능직 전문자격증소지자 1명에 대하여 채용 확보 중에 있으며, 2명 이상의 부족 되는 필요 인력은 인력관리 부서와 적극 협의·확보할 계획이며, 임대농기계의 작업현장에 직접 출고 및 입고하는 '퀵서비스 제도'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농기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li> </ul>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7	읍·면 세출자금 관리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장은 적정금액의 자금을 요구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과다한 금액이 읍·면 통장에 예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에 따라 적정 금액을 요구하여 과다한 금액이 읍·면 통장에 예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음.</li> </ul>	읍·면